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1599호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장학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장학금 지원대상: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분야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청소년\*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출생년도 2001.1.1. ~ 2016.12.31.)

\* (대학생) 국내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2. 장학금 지원규모: 340백만원

3. 장학금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금: 1인당 200만원 이내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타 지급된 등록금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인 경우 연간 수업료

○ 생활비 장학금: 1인당 100만원(생애 1회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 학교 밖 청소년장학금: 1인당 100만원(생애 1회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 대학 진학 시: 대학 등록금(등록금 납입영수증 제출) 지원

\* 대학 미진학 시: 사용처 제한(직업훈련(취업연계) 또는 자기개발 관련)하여  
탐나는전으로 지원

4. 장학금 지원 세부기준

구 분		기 준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li> </ul>
등 록 장 학 금	어려운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대학생</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대학생</li> <li>•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중인 대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지도자 자녀</li> <li>• 의용소방대원 자녀</li> <li>• 청소년지도위원 자녀</li> <li>• 자율방재단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li>• (성적) : 100분의 50 이내의 자</li> <li>• (활동경력) : 2년 이상 ~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상 :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li> <li>- 3년 이상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li> </ul> </li> </ul>
	근로청소년(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ul>
	모범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li>• (성적) : 100분의 20이내의 자</li> </ul>
	의사상자 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ul>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ul>
	생활비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대학생</li> <li>• (성적) : 100분의 50이내의 대학생</li> </ul>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전년도(24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li> <li>•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ul>	

## 5. 신청안내

-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고시공고)
-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붙임)

## 6.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5. 4. 29(화) ~ 5. 16(금) 1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내 도착 분까지)
- 접수처

접수처	전화번호	주소	비고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064-728-2602	제주시 광양9길 3, 5별관 2층 여성가족과(이도2동, 제주시청)	방문 또는 등기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2462	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층 여성가족과(서흥동, 서귀포시청)	방문 또는 및 등기
주소지 읍·면·동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별도 문의		방문접수

- 유의사항: 우편 접수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7. 선발방법 및 결과통보

- 선발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결과통보: 2025. 6월 중(장학금 지원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2025. 6월 중(계좌입금 개별 통보)

## 8.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064-710-2843)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구 분	자 격 기 준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특별장학금</p> <p>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다만, 생활비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b>100분의 50 이내인 사람</b></li> <li>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대학생</li> <li>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li> </ol>
<p>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p>	<p>새마을운동에 <b>2년 이상</b> 봉사한 현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서 <b>경제적으로 어려워</b>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li> <li>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b>100분의 50 이내인 사람</b></li> <li>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li> </ol>
<p>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p>	<p>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b>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b>으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람과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며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p>
<p>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p>	<p>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으로 <b>3년 이상</b>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b>경제적으로 어려워</b>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b>100분의 50이내인 사람</b></li> <li>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li> </ol>
<p>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p>	<p>품행이 단정하고 <b>경제적으로 어려워</b>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b>100분의 20 이내인 사람</b></li> <li>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li> </ol>

구 분	자 격 기 준
<b>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b>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자녀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b>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b>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b>	청소년지도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현직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b>지역자율 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b>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b>생활비 장학금</b>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b>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b>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비고)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2.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란 학년 무단결석 15일 이상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학과성적”이란 전년도 성적으로 학교장, 대학총장(학장)이 인정하는 성적을 말한다.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또는 전국대회(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최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입상한 사람을 말한다.
5. “유공자”란 행정시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를 말한다.

## 붙임 2

## 소득 및 성적 기준

###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20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2] 성적기준

○ 대학 성적 기준

구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성적등급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 고교 성적 기준

-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 수능 또는 내신 영역(국, 수, 영, 한, 탐) 합산 평균 2.5등급 이내

-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 수능 또는 내신 영역(국, 수, 영, 한, 탐) 합산 평균 4.5등급 이내

구 분	제출서류
<p>등록금 장학금 공통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뒷자리까지 표기, 세대구성, 편입일, 최근 주소 변동 포함)</li> <li>* 부 또는 모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2025. 1학기 수업료 납입영수증</li> <li>○ 통장사본(부모 또는 학생 본인)</li> <li>○ 개인정보제공동의서</li> <li>○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li> </ul>
<p>어려운 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증명서, 시설장 추천서</li> <li>○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입소자 증명서, 시설장 추천서</li> </ul>
<p>의사상자가족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부/모 모두, 2025. 3월 기준)</li> <li>○ 의사상자 증명서 등 의사상자 유족·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p>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li> <li>○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부/모 모두, 2025. 3월 기준)</li> <li>* 가족의 범위: 부, 모, 형제자매</li> </ul>
<p>산업체 근로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li> <li>○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부/모 모두, 2025. 3월 기준)</li> </ul>
<p>모범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별지 제2호 서식]</li> <li>○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직전 1학기, 2학기 성적증명서)</li> <li>* 휴학 후 복학의 경우: 휴학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li> <li>○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부/모 모두, 2025. 3월 기준)</li> </ul>
<p>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소속단체장) [별지 제2호 서식]</li> <li>○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직전 1학기, 2학기 성적증명서)</li> <li>* 휴학 후 복학의 경우: 휴학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li> <li>○ 소속단체장의 활동(근속) 확인서</li> <li>○ (유공새마을지도자 해당) 표창 등 확인 가능 서류</li> <li>○ (기능, 체육, 예능 우수자 해당) 입상(수상) 증명서류</li> <li>*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대회(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최)에서 입상</li> <li>○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부/모 모두, 2025. 3월 기준)</li> <li>* 행정시 단위 단체장이 일괄 추천하여 행정시로 접수</li> </ul>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구 분	제출서류
생활비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 대상자)</li> <li>○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직전 1학기, 2학기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학 후 복학의 경우: 휴학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li> </ul> </li> <li>○ 대학 재학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편입일, 최근 주소 변동 포함)</li> <li>○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단, 등본 상 가족이 전원 등재된 경우 생략가능)</li> <li>○ 통장사본(부모 또는 학생 본인)</li> <li>○ 개인정보제공동의서</li> <li>○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li> </ul>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류) 전년도('24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편입일, 최근 주소 변동 포함),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부/모 모두, 2025.3월 기준)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 또는 모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ul> </li> <li>○ (대학진학 청소년) 대학 합격증서, 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학생 본인),</li> <li>○ (대학 미진학 청소년) 탐나는전 카드 사본(부모 또는 학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탐나는전 카드사본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ul> </li> </ul>

\* 수업료 납입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